

건강검진기관 평가·지정제 실시, 검진 질관리 강화

강경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정보모니터링팀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건강검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7.31)와 입법예고(7.31~8.22)를 실시하였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간 국가건강검진은 양적인 지원 규모에 비해 국민의 만족도가 낮은 뿐만 아니라, 목표 질환 부재, 표준 검진 정보의 부족, 검진 결과의 낮은 신뢰도, 사후관리 부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¹⁾.

「건강검진기본법」은 이러한 국가건강검진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적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기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 제정·공포되었으며, '09년 3월 22일시행을 앞두고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이유는 「건강검진기본법」의 제정(법률 제8942호, 2008.3.21 공포, 2009.3.22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구성,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합 관리하고, 검진기관의 지정·지정취소제, 평가제 등을 도입하여 부실검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공청회를 통해 소비자단체, 근로자 단체, 보건의료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국가건강검진이 실시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 밝혔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내용

- | |
|---|
| <p>[1] 국가건강검진을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각계와 협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동 위원회에 국가건강검진 소관부처뿐만 아니라 소비자·근로자·검진기관·학교장 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하였고, 건강검진의 목표질환, 대상연령, 검진 시기·방법 등 표준 권고안을 비롯, 국가건강검진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였다.</p> <p>[2] 검진기관 지정제는 국민편의를 위한 검진기관 접근성과 국민신뢰를 위한 검진기관질관리를 고려하였다.</p> <p>① 검진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p> <p>②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국민들이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p> <p>③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만이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였다.</p> <p>④ 출장검진은 검진의 편의와 접근성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를 고려하여 필수적인 경우에 인정하였다.</p> <p>[3] 국가건강검진 질관리에 대해 검진기관의 관심과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고, 국민에게 검진기관 선택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한 검진기관 평가제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이 갖춰야 할 사항을 평가하고, 2년 마다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p> |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2008. 7. 30)

1) 복지부 소관 국가 검진은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 검진 등으로 연간 5,800억원 규모('08)